

PEACEMAKERS 2018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

사회복지법인 PEACEMAKERS에서는 2018년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신청 자격

-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민간단체
- 국내외 아동·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
- 단체의 장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단체 (정규직, 계약직 모두 포함)
-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00,000,000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
- 아동·청소년 관련 미신고시설 (가톨릭사회복지회에 등록 인준 필요)
- 독립된 기관 또는 시설 ('부설'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)
- 기타 PEACEMAKERS가 정하는 사업지원 신청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단체

2 지원 대상 사업

- 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아동·청소년 관련사업
-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
- 다문화가정의 아동·청소년 및 관련 사회복지사업
- 차상위 계층 및 정부지원 사각지대 대상에 대하여 우선 지원

3 사업비 지원 원칙

- 기관 자체 내의 단순한 선교 활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지정기탁에 의한 지원 외의 동산·부동산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.
- PEACEMAKERS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장은 공고된 기일 내에 본 법인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원칙적으로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사업내용에 한하여 지원하며,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합니다.
-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 (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, 매년 재승인)

- 사업별 최대 지원금은 일천만원(금 10,000,000원)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, 일시적인 지원과 시설 보수 및 건축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인건비(대체인력 및 계약직, 아르바이트 비용 등)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며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합니다.
 - 가. 신규 세목 설립 불가.
 - 나. 목간 예산액 전용 불가.
 - 다. 세목 간 예산액 전용 가능. (사전 승인 필요)
-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신청 금액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.
 - 신청 기관의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 - 변경된 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.
-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학습프로그램의 경우 5,000,000원 이하에서 지원하며 일시적 학원비 지원은 불가함.
 - 나. 설립2년 이내의 신생기관은 별도의 심사에 따라 물품 및 재정지원 등 기능보강 사업 지원 가능.
 - 다. 전문 인력 인건비의 경우 심의 후 지원 가능.

4 심사 기준 및 과정

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 내용이 공동선 향상과 인간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.
- 사업의 필요성, 적합성, 효과성, 투명성, 인력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,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의합니다.
- 1차 서류심사,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지원합니다. (필요한 경우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)

5 지원 제외 대상

- ※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 -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
 -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
 -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
 -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
 - 1회성 행사 & 비품/장비 구입비용이 사업비의 50%를 초과하는 사업
 -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PEACEMAKERS의 설립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

6 지원 취소 또는 환수

※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PEACEMAKERS의 사업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금을 환수합니다.
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
-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
-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- 지원 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-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

7 기타 유의사항

- 예산 수립 시 반드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.
- 지원 받은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법인이 공지한 기간 내에 첨부한 양식에 의거 사업결과보고서 및 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종료 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안내에 따라 반납처리 하도록 합니다.
(단, 예금이자는 신청기관의 잠수입으로 처리함)
- 지원 받은 수행기관은 본 법인이 지원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홍보물(현수막, 리플렛, 보고서 등)에 PEACEMAKERS가 지원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 중간보고서 제출요구 및 기관방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8 사업 추진 기간

- 공고 기간 별도 공지
- 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특성상 승인된 지원사업이 이미 시작한사업일 경우, 소급해서 사업비를 적용시킬 수 있음.

9 신청 및 접수 방법

- 신청기간 : 별도 공지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-mail 접수
(우편 접수 불가)

○ 유의사항

- 신청공문은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E-mail 접수하며 첨부하는 스캔 자료 및 사진자료의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
- 신청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 양식과 세부사업 실행 계획서 등은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.

10 제출 서류

○ 신청공문 (스캔하여 E-mail 접수)

○ 지원사업 신청서, 세부사업 실행 계획서, 기관소개서 각1부 (E-mail 접수)

○ 사회복지기관 등록 증명서류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

- 기타 시설 신고 증빙 서류 사본 1부

11 문의처

PEACEMAKERS Tel : 02) 2258-8341~2

주소 : (우)017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평화빌딩 15층

E-mail 주소 : peacemakers@catholic.ac.kr

홈페이지 : www.peacemakers.kr

Fax : 02) 2258-8346